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2. 16 선고 2021가단1070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박현진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1. 12.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0. 5. 22. 접수 제855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발생

- 1) 원고는 소외 B이 대표자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이자율을 연 2.58%에서 연 3.49%의 범위로 정하여 합계 2,0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B은 위 대출계약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대출계약에 기한 B의 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 2) C는 2020년 8월경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B 역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B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는 2021. 3. 17.을 기준으로 1,987,023,000원이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

B은 2001. 1. 17.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피고에게 2020. 5. 22.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0. 5. 22. 접수 제855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B과 피고 사이의 2020. 5. 22.자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고,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B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을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연대보증을 기한 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무자력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D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군포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의 ① 적극재산은 별지2 자산내역표 기재와 같고 그 시가는 669,843,000원 상당¹⁾ 임에 반하여, ② 소극재산은 별지3 채무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E은행, F, G은행 등에 합계 9,527,145,000원 상당²⁾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2 자산내역표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은 1,754,44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가액 산정의 근거로 삼는 을 제2, 3호증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1,754,44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B이 위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1,500,00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거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별지2 자산내역표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1,754,44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B의 소극재산 액수에 비추어 볼 때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은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근로소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피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B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그 실질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이 2001. 1.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0.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B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82년부터 1996년까지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근로소득 및 2007년경부터 'H'라는 상호로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얻은 소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은행에서 근무한 소득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는 2007년경 개업한 업체로 B의 위 아파트 취득일자가 2001년경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H'의 수입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1990년경 안양시 만안구 I아파트 J호를 구입한 이후 1999년경 위 I아파트를 매도하고,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활용하던 중 2001년경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I아파트를 소유하였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을 제1, 4, 5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B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B이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숨겼기에 B의 채무관계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이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가 한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40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21. 10. 5.자 답변서에서 2020년 5월경에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알게 되었으나, B으로부터 정확한 액수를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연대보증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위 증여계약에 따라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병호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동[도로명 주소] 경기도 군포시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층

지붕 25층 아파트

1층 288.718㎡ 2층~25층 287,678㎡ 지층 291.1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군포시 대 40001㎡2. 경기도 군포시 대 26583.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3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28.114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66584.5분의 62.287 끝.

[별지2]

자산내역표

순번	부동산 목록	가액(원)	기준일
1	이 사건 부동산 ³⁾	275,000,000	2020년 5월경
2	인천 중구 K건물 L호 중 2분의 1 지분	202,500,000	2020년 5월경
3	고양시 일산서구 M 답 4,560㎡ 중 4,560분의 66 지분	13,636,000	2020. 9. 3.
4	용인시 처인구 N 임야 18,552㎡ 중 5분의 1 지분	95,357,000	2020. 9. 3.
5	용인시 처인구 O 임야 46㎡ 중 5분의 1 지분	293,000	2020. 9. 3.
6	용인시 처인구 P 임야 4,803㎡ 중 5분의 1 지분	30,451,000	2020. 9. 3.
7	화성시 Q 임야 1,814㎡	52,606,000	2020. 9. 3.
합계		669,843,000	

3) 이 사건 부동산은 가액은 시가 515,000,000원에서 채권자 G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였다.

[별지3]

채무내역표

대출기관	채무액(원)	발생일 또는 개설일	조회일자
중소기업은행(원고)	1,987,023,000	2018. 12. 11.	2021. 2. 26.
E은행	1,000,000,000	2019. 5. 7.	2021. 2. 26.
F	6,520,122,000	2015. 12. 7.	2021. 2. 26.
G은행	20,000,000	2018. 5. 17.	2021. 3. 17.
합계	9,527,145,000		

1) 위 자산내역표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위 자산내역표 '가액'란 기재와 같고, 그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위 자산내역표 '기준일'란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5. 22. 기준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2) 위 채무내역표상 각 채무의 조회일자는 같은 표 '조회일자'란 기재와 같다. 한편 위 각 채무는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채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5. 22. 기준 채무액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